논문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최선영(Choi, Sun-young)** · 이승휘(Lee, Seung-hwi)***

1. 머리말
2.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의 개요
   1)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의 조직 및 구성
   2) 미국 역사적 건축물 조사의 역사 및 관계
   3) 역사유적지법의 제정 및 주요내용
   4) 미국 역사적 건축물 조사의 진행절차
3. 미 의회도서관 소속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
   1)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과 미 의회도서관의 관계
   2) 미 의회도서관의 컬렉션 구축
4.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의 현황 및 제안
   1)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 현황
   2) 법 제도의 강화
   3) 지속적인 기록화를 위한 방안
   4) 컬렉션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5. 맺음말

* 본 논문은 2016년 2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와 비교를 중심으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최선영,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승휘,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정보전문대학원 교수.
■투고일 : 2016년 6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6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2일.

〈초록〉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가문화유산포털, 근대건축물 기록화, 문화재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미 의회도서관, 역사적 건축물 조사

〈Abstract〉

A modern architectural building is a cultural heritage, which is also part of our history until the present. Documentation is thus considered an irreplaceable method to preserve our cultural heritage as it may be the last resort of preservation. The study analyzed the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HABS) on the 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mparison and

documentation of the modern architectural building implemen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study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specifically detailed regulations of the legal system are supposed to be u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ocument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buildings.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 general plan for continuous documentation be made. Last, by setting up a collection method, an information service needs to be provided for the public.

Keywords :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 Modern Architecture Documentat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National Park Service, Library of Congress,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1. 머리말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재조명되고 있다. 근대건축물은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전쟁전후까지의 서구의 건축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 · 제작 · 형성된 건축물로 정의 될 수 있다(김수진 2013, 1).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축에 대한 보존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근대건축물은 일제의 잔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건축물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예로 '국회 토론회서 서울시청사 철거 논란'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잔재 건축물 서울시청, 존속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상반된 두 주장이 있었다. 서울시청은 일제의 잔재이므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면서 철거를 주장했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건축사적 의미를 감안해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다(연합뉴스, 2008년 12월 15일 기사). 이처럼 근대건축물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으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건물[1]의 철거와 같이 많은 수의 근대건축물이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발"이라는 논리 속에 근대건축물은 그 자취를 더욱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김동식, 김태영 2002, 127). 근대건축물의 철거로 사진으로 나마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진조차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근대건축물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그 속에 아픈 역사를 담고 있을 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서구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혼란을 겪은 근대의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나마 보여준다. 이러한 근대건축물이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소멸, 훼손되어 가던 중에 근대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시기로 바라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문예은 2010, 71). 2001년 7월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정문화재' 제도가 국가의 강제성에 입각한 타율적인 엄격한 보존 장치인 반면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전제로 한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보존방식이다(문예은 2010, 75). 하지만 이와 같은 등록문화재 제도 성격으로 인해 보존가치가 있더라도 소유자나 지자체에서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못한다.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법적인 보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건축물이 보호받지 못하고 훼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를 다양하게 '활용'(문화재청 2005, 6) 할 수 있다는 점을

1)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총독부의 건물로 1945년 광복 이후 국회의사당,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되었다.

들 수 있다. 건축물의 활용을 통해 현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지만, 건축물의 활용이라는 등록문화재 제도로 인해 건축 요소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근대건축물 외관과 내부에 건축요소들로 그 시대의 문화·사회·기술의 총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김수진 2013, 92) 근대건축물의 활용 전의 기록화의 의미가 중요해 질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부터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사례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HDP)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은 건축물 기록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33년부터 역사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를 시행하였다. 역사적 건축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공학기술[2], 경관[3]을 대상으로도 기록화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에 역사적 건축물 조사(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HABS)의 분석을 통해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의 개요

1)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의 조직 및 구성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하나로 미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산하의 기관이다. 1916년 8월 25일에 제정된「국립공원국 조직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370개가 넘는 국립공원과 산, 경관이 빼어난 공

2)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HAER)
3) 역사적 경관 조사(Historic American Landscapes Survey, HALS)

원도로와 해안도로, 해변, 휴양지, 역사유적지를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자연적·문화적 유산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대상 지역을 '국립공원시스템'이라 한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부서인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HDP)은 연방정부의 가장 오래된 보존 프로그램인 역사적 건축물 조사(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HABS)와 동반자 프로그램인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HAER)[4]과 역사적 경관 조사(Historic American Landscapes Survey, HALS)[5]를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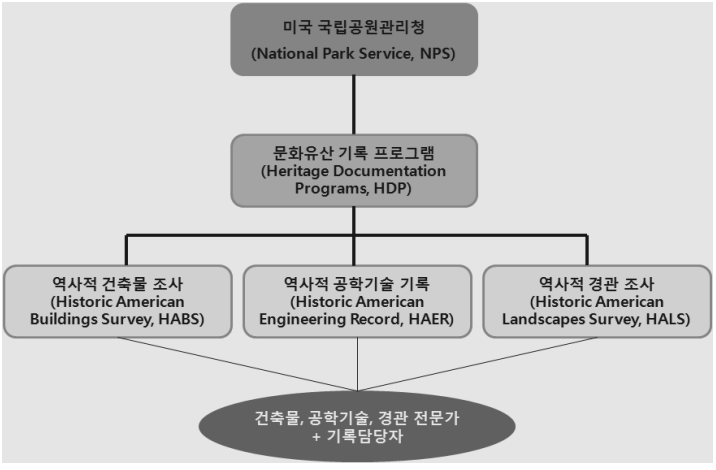

4) 1969년 1월 10일,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및 미국 토목학회 (ASCE)에 의해 설립되었다.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의 문서들은 역사적인 기계 및 공학적 유물을 대상으로 한다(이세욱 2015, 24).

5) 2000년 10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및 미국 조경가 협회(ASLR)는 역사적인 미국의 경관에 체계적인 문서화를 위하여 역사적 경관 조사(HALS)를 설립했다. 역사적 경관 조사(HALS)의 전신은 역사 경관과 정원 프로젝트(HALGP)였다. 1935년과 1940년 사이에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매사추세츠 정원(Massachusetts gardens)을 기록했고 공공사업추진청(WPA)에 지원을 받았지만 기록의 수집, 관리에 대한 감독은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에 의해 이루어졌다(이세욱 2015, 25).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는 역사적인 건축물, 공학기술, 풍경 전문가와 함께 미 의회도서관으로 기록을 보내는 소규모의 직원(17명 가까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그림 1〉은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의 조직도를 구성해 본 것이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는 파괴의 위험에 처했거나 부주의에 의한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유적지의 우선사항을 부여하여 건축물, 공학기술 기록화를 위해 미 내무부 장관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록화가 진행된다. 주, 지방정부, 민간기업, 전문단체, 대학, 보존그룹 및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기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은 또한 기록화 기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매년 약간의 기록을 준비하고, 건축학, 공학기술 기록을 위해 미 내무부 장관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를 통해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서면 보고서 등의 기록은 역사적인 건축물, 공학기술, 경관의 전국 최대 규모의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기록은 국가의 역사적인 랜드마크에 대해서 넓은 인식과 역사적 자원의 가치상승에 기여를 하고 연구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은 미 의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2) 미국 역사적 건축물 조사의 역사 및 관계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찰스 E. 피터슨은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실직 중인 건축가들에 의해서 10주 동안 미국의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록화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는 1933년 12월에 시작되었다.

찰스 E. 피터슨은 “내가 제안한 그 계획은 미국의 오래 전부터 남아있던 중요한 건축물들을 연구, 측정하여 실측도면 등 세부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건축가와 도안의 자격을 갖춘 그룹이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건축 유산은 지난 4세기부터 놀라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화재와 자연적인 요소, 부동산 ‘개선’ 방식으로 인한 파괴 및 개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거침없는 파괴의 흐름은 역사적인 건축물의 대부분을 전멸시킬 운명으로 만들었다. 주택전시관, 박물관 또는 사용용도가 바뀌어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업적 사용으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남아있을 수 있었던 비교적 적은 건축물들은 흥미롭고 중요한 건축물의 견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만약 엄청난 수의 오래 전부터 남아있던 건축물이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다면 사라지는 건축물들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미국 시민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였다.

실용적이고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건축물 그리고 공학기술의 구조는 유지가 쉽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 대형 객체가 될 수 있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를 창조하기 위한 찰스 E. 피터슨의 제안은 역사 그리고 건축학 자원이 빠르게 사라지는 문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할 때 건축물이 사라지는 이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기록화를 통해 건축물 보존의 대체 수단이 되도록 하였다. 기록화는 일상적인 관리 또는 치명적인 손실로부터 보호, 역사적인 구조의 관리를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찰스 E. 피터슨의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건축 환경을 조직적으로 기록화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계획이었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는 공공 영역을 위해 표준화 한 기록 및 재현할 수 있는 기록 형식을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찰스 E. 피터슨의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가 시작되게 되었다. 처음 2년 동안 다양한 관리당국 아래에서 시행되었고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는 1934년 7월에 미국 국립공

원관리청의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1935년「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 of 1935)」의 한 부분으로써 의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미 내무부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을 통하여 열람 및 보존을 위해 미 의회도서관에 전달되는 문헌을 작성, 조사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 의회도서관에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은 미국의 건축, 산업, 토목 및 조경에 대한 독특하고 가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의 저장소로 성장해왔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의 설립에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미 의회도서관과 함께 미국 건축가 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는 자문 자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미국 건축가 협회, 미 의회도서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2〉 NPS, AIA, 미 의회도서관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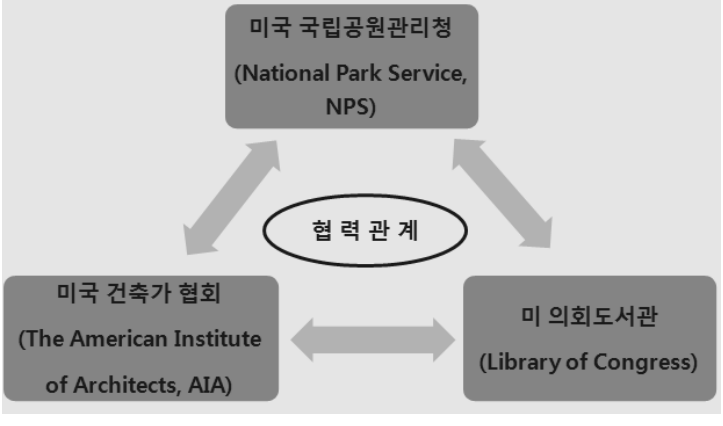

오늘날 기록은 주로 건축학과 역사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한 학생들에 의해 생산되어지고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그리고 역사적 경관 조사(HALS)는 건축가, 기술자, 사학자의 여러 세대에 걸쳐 중요한 교육 분야로 증명되었다.

3) 역사유적지법의 제정 및 주요내용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은 역사적인 현장, 건축물 기록화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미 내무 장관 아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연방 정부 소유의 공원, 기념비적인 건축물, 역사적인 현장의 체계화를 위해 미국의회에 의해서 1935년 8월 21일에 제정하였다.「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은 16 U.S.C 461 Section 1~467 Section 7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 16 U.S.C. 461 Section 1 에서 미국의 국가적 의미가 있는 사적지, 건물, 물건의 공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6 U.S.C. 462 Section 2 에서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과 미 내무 장관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이러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와 기능을 수행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 16 U.S.C. 462
> (a) 사적이고 고고학적인 현장, 건물, 물건에 관한 그림, 지도, 사진, 기타 정보 등을 보호, 수집, 보존한다.
> (b)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현장, 건물, 물건을 조사하여 어느 것이 미국 역사를 기념하거나 실증하는 특출한 가치를 갖는지 판단한다.
> (c) 미국 역사를 기념하거나 실증하는 특출한 가치에 관해 진실

하고 정확한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의 특정 현장이나 건물, 물건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다.

16 U.S.C. 462의 (a), (b), (c)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한 현장 및 건축물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이루고 있다. 역사적인 현장, 건축물의 기록화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던 그림, 지도, 사진, 기타 정보 등의 수집과 보호, 보존에 대해 법으로 제정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건축물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 등의 수집된 기록을 통한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그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러한 기록의 보존을 통한 기록의 다양성 확보와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16 U.S.C. 462는 (d)사유지 또는 부동산의 연방 획득(소유권), (e)협력적인 계약, (h)역사적인 부동산의 운용과 관리, (i)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기업의 조직에 대한 법령으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U.S.C. 462

(d) 이 법령의 섹션 1에서 7까지의 목적을 위해, 기증, 매입, 혹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이름으로 획득한 사유지나 부동산 혹은 그 안의 모든 이해관계와 재산, 어떤 부동산이든 그 소유권은 장관에게 속한다. 단 종교단체나 교육단체가 소유하거나 공공 혜택을 위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획득될 수 없다. 또한 어떤 부동산이든 의회에서 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자금을 책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재무부의 일반 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워 획득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획득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e) 정부나 시 분과, 기업, 협회, 개인과 계약하고 협력 합의를 체결할 시에는 그 소유권이 미국에 속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공공 사용을 위해 관련되어 사용되는 모든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건물이나 현장, 물건, 부동산을 보호 혹은, 보존, 유지, 운영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적절한 계약으로 체결한다. 단 의회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책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기 전에 재무부의 일반 자금을 강요하는 계약이나 협력 합의는 체결 혹은 시작해선 안 된다.

(h) 이 법령 섹션 1에서 7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만약 장관이 책임자인 개인이나 회사, 기업과 광고와 경쟁 입찰 없이 그러한 사용권이나 임대차 계약, 승인을 허가하고 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역사적, 고고학적 현장, 건물, 재산과 함께 토지와 부가 건물까지 공적 혜택을 위해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 권한에는 대중을 수용하거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될 때 합리적인 입장료 부과와 사용권 허가나 임대차 계약, 혹은 토지, 건물 공간, 도로, 산길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 포함된다.

(i) 장관이 국립공원 사업을 통해 미국에 기증된 어떤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현장, 건물, 재산이 복원이나 재건, 운영, 유지가 관리상 부담된다고 결정하면, 콜롬비아나 다른 어떤 주의 법률에든 의거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을 조직하여 똑같은 업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

16 U.S.C. 462 (f), (e)를 살펴보면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의미를 갖는 건물, 물건, 부동산을 복원, 보존, 유지하며 바람직한 장소에 그와 관련하여 박물관을 설립, 유지하고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의미를 갖는 장소와 사건들에 표시할 혹은 기념할 명판을 세우고 유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두 법의 조항은 보존 작업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 U.S.C. 462 (j)에서는 '미국의 국가적 의미를 가진 역사적, 고고학적 현장, 건물, 재산에 관한 사실과 정보를 대중에게 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역사적, 고고학적 현장, 건물, 재산 등의 보존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의 수집과 생산을 통해 기록의 활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6 U.S.C. 463 Section 3에서는 국립공원시스템 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6 U.S.C. 463 (a)를 살펴보면 자문위원회는 국립공원사업, 국립공원시스템, 국립공원사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감독관이 제출한 사안뿐 아니라 위원회가 지정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함을 열거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기에 따라 장관에 의해 지명한다.
② 임기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12명을 넘지 않는다.
⑤ 국립공원사업의 소임에 대한 헌신을 보이는 미국 시민들 중에 지명한다.
⑥ 위원회 구성원들은 국립공원사업의 운영 지역 각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어야 한다.
⑦ 최소한 6명의 구성원은 다음 분야 중 1 혹은 그 이상에서 탁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사, 고고학, 인류학, 역사건축학 혹은 조경학, 생물학, 생태학, 지질학, 해양과학, 사회과학)
⑧ 최소한 구성원 4명은 국립자원이나 문화자원 관리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⑨ 그 외 구성원들은 위에 기술된 분야나 기타 전문적 혹은 과학

적 훈련, 가령 국립공원사업 소임에 중요한 재정 관리나 여가 활용 관리, 토지 사용 계획, 사업 관리에 관한 탁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⑩ 최소한 1명은 공원 주변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의 임무는 장관에게 국립공원 제도, 기타 관련 분야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의 Section 1에서 7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관이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사안들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의 역사적 랜드 마크와 자연적 랜드 마크로의 지정에 관한 추천도 제시한다. 그런 추천을 할 시에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주요 학문적, 전문적 조직과 상의하도록 위원회에 강력히 권장하고 있음을 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16 U.S.C. 464 Section 4는 정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사항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16 U.S.C. 464

(a) 장관은 이 법령의 섹션 1에서 7까지의 운영에 관하여 연방, 정부, 시의 부서나 기관, 혹은 교육단체나 과학단체, 또는 애국협회나 개인 누구든 협력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수용할 권한이 있다.

(b) 필요하다고 간주될 시에 역사적 혹은 유사이전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복원이나 재건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 자문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다.

(c) 이 법령 섹션 1에서 7까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함에 따라 그러한 전문적, 기술적 지원이 도입되고 그러한 사업이 수립될 수 있으며 자금은 의회에서 책정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기부로 마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은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의 기록화를 시행하는데 있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과 관련 된 기록의 수집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록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살펴볼 수 있었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의 제정된 규칙과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 500$ 미만의 '벌금형'의 규정을 두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엄중히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자문위원회, 정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사항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화 및 보존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4) 미국 역사적 건축물 조사 진행절차

〈그림 3〉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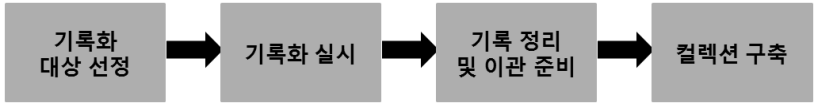

위의 〈그림 3〉은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진행 절차에 대한 그림이다. 각 진행절차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정기준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록화를 위한 건축물의 선정기준을 살펴보겠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역사적 랜드 마크와 자연적 랜드 마크로의 지정을 추천 할 수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추천을 통해 선정

된 현장 또는 건축물 중 국가, 주, 지역 레벨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파괴의 위험에 처했거나 부주의에 의한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유적지에 우선사항을 부여하여 기록화가 진행된다.

(2) 수행주체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는 역사적인 건축물, 공학기술, 경관 전문가와 함께 미 의회도서관으로 기록을 보내는 소규모의 직원(17명 가까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 직원은 기록화 기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매년 약간의 기록을 준비한다. 기록담당자들은 기록을 모으고, 기록을 미 의회도서관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한다.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은 매년 기록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미국 시민이면서 건축학, 공학기술, 조경술 또는 역사학 분야에서 학위 수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기록 프로그램(Summer recor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 기록 프로그램은 매년 학생, 실무자 고용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여름 기록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역사적인 건축물, 구조, 유적지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록을 통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업무는 현장에서의 현장작업과 미 의회도서관의 인쇄 및 사진 부서(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에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을 위한 실측 및 해석 도면, 서면 보고서의 준비 등에 참여시킨다. 프로젝트는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2 동안 지속된다.

톰킨스 단체(Tompkins Fellowship)는 건축사협회(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SAH)와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건축

사(architectural history) 또는 관련 분야의 대학원 학생 중 여름 12주 동안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는 주로 완화 기록화 프로그램(mitigation documentation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완화 기록 프로그램은 개정된 「국가유적보존법(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의 Sections 106[6]과 110b[7]의 규정에 따라, 철거 또는 실질적인 변경과 같은 연방 정부 행동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지역사무소는 기록화의 최종검토 및 컬렉션을 포함하여 워싱턴 D.C. 사무소로 제출되는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기록의 이러한 측면을 감독한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는 기부형식으로 기록을 받기도 하고 「국가유적보존법(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Section 110을 준수하여 기록을 생산한 사람들로부터 기록을 받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름 기록 프로그램, 톰킨스 단체, 완화 기록화 프로그램을 통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의 기록이 생산 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의 수집을 통한 건축물 관련 기록들을 확

---

6) [16 U.S.C. 470f－역사지보존 자문위원회, 연방 프로젝트에 대한 코멘트]
연방 프로젝트 혹은 연방에서 지원하는 주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할권을 가진 연방 기관의 책임자와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진 연방 부서나 독립 기관의 책임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기금의 지출을 승인하기 전에 혹은 어떤 허가증이든 발행하기 전에, 경우에 따라, 국가 등록물에 포함되거나 포함 자격이 있는 지역이나 현장, 건물, 구조물, 물체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관련 연방 기관의 책임자는 이 법률의 조항 Ⅱ에 따라 역사지보존 자문위원회에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코멘트를 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16 U.S.C. 470h-2(b)－철거 전 역사적 재산의 기록]
(b) 각 연방 기관은 기관이 수행하는 연방 활동이나 지원의 결과로 역사적 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철거되는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별 단계에 따라 기록이 작성되도록 보장할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이 법률 섹션 101(a)에 따라 향후 이용과 참고를 위해 의회 도서관이나 장관이 지정한 다른 적합한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록화 시행 및 기록생산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은 건축물, 공학기술 기록을 위해 미 내무부 장관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록화가 진행된다.

FEDERAL REGISTER(연방 관보)에서 건축물과 공학기술의 기록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역사적 건물, 현장, 구조물, 물체, 풍경의 어떤 점이 의미 있는지 혹은 가치 있는지 기록을 통해 적절히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중요도의 따라 기록화 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레벨별(A. 레벨 I, B. 레벨 II, C. 레벨 III)로 제시해주고 있다.

A. 레벨 I
1. 도면: 현재의 혹은 역사적 상태를 묘사하는 측정 도면 일체
2. 사진: 대형 포맷(large-format) 네거티브로 외부와 내부 경관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선택된 기존 도면 혹은 역사적 경관을 U.S. 저작권법(개정된)에 의거하여 대형 포맷 네거티브로 제작한 복사본들
3. 문서화된 데이터: 역사와 설명

B. 레벨 II
1. 도면: 입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존 도면 중에 선택하며 대형 포맷 네거티브로 사진을 찍거나 개정된 U.S.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마일러(Mylar)에 사진처럼 복사할 수 있다.
2. 사진: 대형 포맷(large-format) 네거티브로 외부와 내부 경관을 찍은 사진들, 역사적 경관을 U.S. 저작권법(개정된)에

의거하여 대형 포맷 네거티브로 제작한 복사본들
3. 문서화된 데이터: 역사와 설명

C. 레벨 III
1. 도면: 스케치 계획
2. 사진: 대형 포맷(large-format) 네거티브로 외부와 내부 경관을 찍은 사진들
3. 문서화된 데이터: 역사와 관련된 짧은 형식의 보고서

기록의 종류와 양은 기록화 하려는 대상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크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레벨 I 이 제시하는 대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중요치 않은 건물에 대해 측정 도면 전부를 만들기 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C. 레벨 III의 기록화 조건이 이런 유형의 건물을 기록화 하는 데에 더 적합한 선택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물, 현장, 구조물, 물체, 풍경에 대하여 기록화된 내용은 건축물의 종합적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기록은 일반적으로 사진, 실측도면, 서면 보고서의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이런 매체만을 다루었지만, 기록을 꼭 이런 매체들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산업적 과정에 대한 영상과 같은 다른 매체들도 역사적 건물, 현장, 구조물, 물체, 풍경을 기록화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 왔다. 적절한 기록화 레벨의 선택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완화 기록화 프로그램(mitigation documentation program)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지역사무소에서 적절한 레벨을 선택하고 기록화 완성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역사기념물과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주요 역사적 단위로 규정된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과 구

조물들에는 레벨 I 문서가 요구된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레벨별(레벨 I, 레벨 II, 레벨 III)로 샘플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볼 기록 생산물은 The Woodlands의 건축물을 레벨 I 으로 기록화 한 보고서, 도면, 사진이다.

〈그림 4〉 The Woodlands, Philadelphia, PA의 보고서, 도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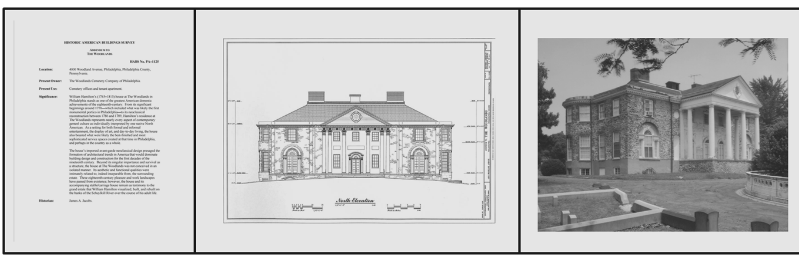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ADDENDUM TO
THE WOODLANDS

HABS No. PA-1125

Location:	4000 Woodland Avenue, Philadelphia, Philadelphia County, Pennsylvania.
Present Owner:	The Woodlands Cemetery Company of Philadelphia.
Present Use:	Cemetery offices and tenant apartment.
Significance:	William Hamilton's (1745-1813) house at The Woodlands in Philadelphia stands as one of the greatest American domestic achievements of the eighteenth-century. From its significant beginnings around 1770—which included what was likely the first monumental portico in Philadelphia—to its neoclassical reconstruction between 1786 and 1789, Hamilton's residence at The Woodlands represents nearly every aspect of contemporary genteel culture as individually interpreted by one native North American. As a setting for both formal and informal entertainment, the display of art, and day-to-day living, the house also boasted what were likely the best-finished and most sophisticated service spaces created at that time in Philadelphia, and perhaps in the country as a whole. The house's imported avant-garde neoclassical design presaged the formation of architectural trends in America that would dominate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for the first decades of the nineteenth century. Beyond its singular importance and survival as a structure, the house at The Woodlands was not conceived in an isolated manner. Its aesthetic and functional qualities were intimately related to, indeed inseparable from, the surrounding estate. These eighteenth-century pleasure and work landscapes have passed from existence; however, the house and its accompanying stable/carriage house remain as testimony to the grand estate that William Hamilton visualized, built, and rebuilt on the banks of the Schuylkill River over the course of his adult life.
Historian:	James A. Jacobs.

〈그림 4〉는 The Woodlands의 보고서 첫 페이지와 북쪽 입면도(North Elevation), 남쪽 정면(South Facade)의 흑백사진이다. The Woodlands의 건축물의 중요성으로 레벨 I 으로 기록화를 진행하였다. 보고서는 건축물의 위치, 현재 소유자 및 사용용도, 역사적인 정보, 건축학적 정보 등으로 95페이지로 구성된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임을 볼 수 있었다. 실측도면의 경우에는 서쪽 입면도(West Elevation), 식사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의 세부사항(Dinning Room Door Detail)까지 31장의 측정된 도면이 있다. 사진은 북쪽 정면(North Facade), 복도(Passage) 등으로 구성된 컬러사진 3장, 흑백사진 8장이 있다. 보존의 문제로 흑백사진의 수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 볼 기록 생산물은 Coincoin-Prudhomme House의 건축물을 레벨 II 로 기록화 한 보고서, 도면, 사진이다.

〈그림 5〉 Coincoin–Prudhomme House, near Bermuda, LA의 보고서, 도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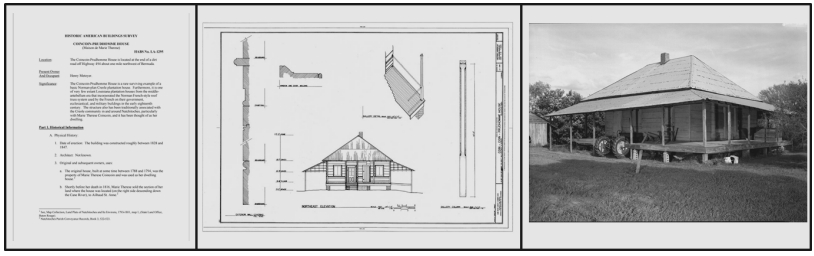

〈그림 5〉는 Coincoin-Prudhomme House의 보고서 첫 페이지와 북동쪽 입면도(Northeast Elevation), 북서쪽 정면(Northwest Facades)의 흑백사진이다. Coincoin-Prudhomme House는 레벨 II 로 기록화를 진행하였다. 보고서는 위치, 현재 소유자 및 사용자, 건축물의 중요성, 역사적인 정보, 건축학적 정보 등으로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실측도면의 경우에는 남동쪽 입면도(Southeast Elevation), 평면도 등으로 7장의 실측도면이 있다. 사진은 Coincoin-Prudhomme House 건축물의 방향이 다른 건축물 정면 사진이 대부분으로, 흑백사진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벨 I 보다 보고서, 실측도면, 사진의 생산 되는 수가 적어졌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록 생산물은 Roaring Creek Friends Meeting House의 건축물을 레벨 Ⅲ 로 기록화 한 보고서, 사진이다.

〈그림 6〉 Roaring Creek Friends Meeting House, Numedia, PA의 보고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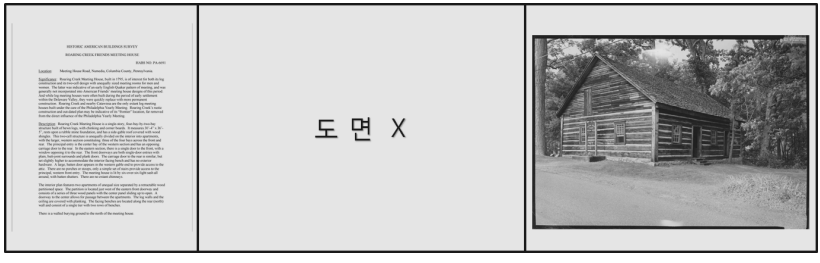

〈그림 6〉은 Roaring Creek Friends Meeting House의 보고서 첫 페이지와 서쪽 정면(west Facades)의 흑백사진이다. Roaring Creek Friends Meeting House는 레벨 Ⅲ로 기록화를 진행하였다. 레벨 Ⅲ는 건축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측도면의 생산은 생략되었다. 보고서는 위치, 중요성, 건축물 설명, 역사 등 2페이지로 상당히 간략하게 작성되었다. 사진은 Roaring Creek Friends Meeting House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 흑백사진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이 없는 대신에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화 하는 레벨도 달라지고 생산 되는 기록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 기록정리 및 이관

건축물을 기록화한 기록은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의 워싱턴 사무실과 미 의회도서관으로 보내진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의 기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전송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였다.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수집의 임무는 토착적인 곳부터 국가적 의미가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현장과 구조물, 미국의 경관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수집은 미 내무부의 건축물, 공학기술, 경관을 기록화 하는 표준이 제시하는 요건들과 미 의회도서관의 기록 요건들에 의해 관리된다. 이 표준과 관행은 오랫동안 수집된 기록들을 관리해왔고, 그것들을 미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다. 또한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어디에서 온 서류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 이런 표준에 부합하여, 프로젝트들은 미 의회도서관으로 최종 전송되기 전에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의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된다.

3. 미 의회도서관 소속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

1)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과 미 의회도서관의 관계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는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기록을 모으고, 기록을 미 의회도서관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한다.

미 의회도서관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 도서관이다. 1800년 존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8]이 의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설립되었다. 워싱턴 D.C. 의사당 내에 설치하여 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에게 필요한 자료나 도서를 제공해준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9]의 후원을 받아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1975년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의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과 미 의회도서관은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로 지정되었다. 협력 아카이브(Affiliated archives)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미 의회도서관은 도면 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가 1933년에 설립된 후 미 의회도서관은 컬렉션을 관리하기로 동의했고 후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으로부터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

8) 1796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미국 제2대 대통령으로 1797년 3월부터 1801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9) 1800년, 제3대 대통령 취임식을 새 수도로 지정된 워싱턴 D.C.에서 거행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1804년 재선되어서 1801년 3월부터 1809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로 지정되었다.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란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과 정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공적 또는 비 국가적 기관이다. 이러한 협력 아카이브즈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영구기록물들을 기록 생산처(creating agency)로부터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의 시설로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의 소속이 아닌 시설과 직원들에 의해 기록물이 관리되고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이세욱 2015, 9).

〈그림 7〉 미국 국립기록관리청과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의 관계(이세욱 201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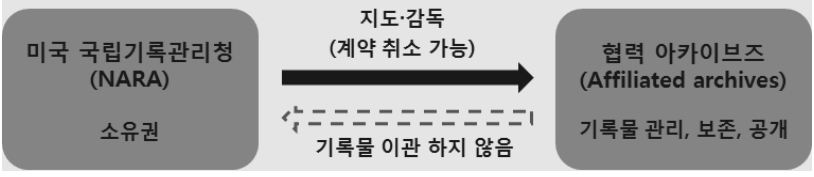

따라서,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는 기록의 법적 및 물리적 보관권을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공 조합 혹은 교육기관, 협회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의 기록물의 접근, 참조 및 보관 기능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세욱 2015, 10). 협력 아카이브즈는 연방 정부 소속기관 6곳, 주 정부 소속기관 3곳 총 9개가 존재하고 있다.[10]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과 미 의회도서관과의 협력 아카이브즈를 체결 한 후에 기록물의 보존과 접근 권한을 미 의회 도서관 인쇄 및 사진 부서(Prints and

10) 연방 정부(미 육군 사관학교〈1953년 지정〉, 미국 국립공원관리청/미 의회도서관〈1975년 지정〉, 옐로스톤 국립공원〈1979년 지정〉, 미 해군 사관학교〈1985년 지정〉, 미 정부 인쇄국〈2003년 지정〉, 북 텍사스 대학 도서관〈2006년 지정〉), 주 정부(뉴멕시코 자문위원회〈1972년 지정〉, 오클라호마 역사학회〈1978년 지정〉, 펜실베니아 주 아카이브즈〈1995년 지정〉.

Photographs Division)로 이전하였다.

2) 미 의회도서관의 컬렉션 구축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로 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아 미 의회도서관 웹사이트의 인쇄 및 사진 온라인 카탈로그(Prints & Photographs Online Catalog, PPOC)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미 의회도서관 웹사이트의 인쇄 및 사진 온라인 카탈로그(PPOC)에는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컬렉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은 인쇄 및 사진 온라인 카탈로그(PPOC)에서 대표 컬렉션으로 분류 될 만큼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 하고 있는 컬렉션이다. 556,900 이상의 실측도면, 대형 사진, 38,600 이상의 역사적 구조물 및 유적지에 관한 보고서 등 다양한 포맷으로 생산된 기록을 통해 미국인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미 의회도서관에서 유지되어지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제공한다. 미 의회도서관 웹사이트의 인쇄 및 사진 온라인 카탈로그(PPOC)를 통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 기록들은 공적인 기록으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 등의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디지털 이미지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지 사용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접한다면 기록의 부분 또는 전부 복사를 인쇄 및 사진 부서 직원에게 문의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적인 조사로써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컬렉션은 건축예술의 표본으로 대표된다.

컬렉션 홈페이지에서 작성자/관련이름별 39,201개의 컬렉션, 주제별 3,282개의 컬렉션, 지리별 8,163개의 컬렉션으로 분류하여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을 둘러 볼 수 있다.

4.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의 현황 및 제안

1) 문화재청 근대건축물 기록화 현황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소속 근대문화재과에서 2001년부터 근대건축물 기록화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화 조사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기록화 조사 사업 추진 절차

기록화 조사 사업의 첫 번째 진행 단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 근대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소속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일상감사 요청을 하게 된다. 일상감사 요청을 받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하면 근대문화재과에서 일상감사 회보 및 조치 계획을 통보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근대문화재과는 문화재청 운영지원과로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수행할 용역 계약을 요청한다. 계약 요청을 접수한 후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입찰정보, ② 문화재청〉행정정보〉SW사업정보〉입찰공고, ③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을 통해서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낸다.

네 번째 단계로 입찰공고문을 통해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게 된다. 제안서 평가는 문화재전문위원이 구성 되어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용역업체가 기록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로 근대문화재과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 알린다. 운영지원과는 제안서 평가 결과 내용을 토대로 선정된 용역업체계약을 체결하고 감독공무원을 배치하게 된다.

여섯 번째 단계로 선정된 용역업체에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고 기록화를 진행하게 된다.

용역업체가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산 한 성과물(최종 보고서, 각종 캐드, 사진 자료 등)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게 된다. 온-나라시스템은 1건당 5mb이내의 첨부파일만을 등록할 수 있어서 원형기록정보관리시스템에 최종 보고서, 실측도면, 사진 등을 등록, 업로드 한다.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최종보고서, 실측도면, 사진 자료 등은 문화재청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와 관련된 통합 DB인 원형기록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구축하였다.

문화재청과 용역업체간의 계약을 통하여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대학과 건축사무소가 주를 이룬다(문화재청 2007, 25). 2001년도 서울에 위치한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을 시작으로 2014년도까지 사적 20건, 등록문화재 163건, 총 183건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추진 실적을 거두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전남 28건, 전북이 18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 법 제도의 강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 · 보존)[11]의 내용이 문화재 기록화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12]의 범위 내에서 법이 규정 되어 있었고, 기록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문화재보호법」의 큰 틀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재 원형보존에 집중된 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문화재의 원형보존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록일 것이다.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291호 개정

11)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 · 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2)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 보물 · 중요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문화재청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5.12.8. http://cha.go.kr).

2013.4.8)의 제목 그대로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것이다. 심의위원회 구성, 기록화 사업의 추진, 성과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령은 대외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라 기록화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록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활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활용'이라는 제도로 인해 수리와 보수를 시행하기 전의 기록화와 수리와 보수를 거쳐 변화된 사항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단순히 변경사항에 대한 간략한 기록의 생산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활용 전과 후에 대한 기록화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36년 건축된 경기도 부천의 구 유한양행 소사공장은 2015년 2월에 철거됐다. 730㎡의 이 건물은 2층과 3층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로 근대적 공장건축의 초기양식이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생기기 전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됐지만 소유자가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문화재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문화재 등록이 해제되었다. 이후에 원룸을 건축하려는 소유주의 개발 의지를 꺾지 못하고 구 유한양행 소사공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기사).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의 기록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 되지 않은 근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기록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발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근대건축물이 철거된다면 철거 전에 기록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

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법으로 규정 되어 철거 전 기록화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기록들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이나 관련 기관 한 곳에서 수집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기록의 수집은 근대건축물의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할 것이다.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대건축물에 관한 기록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기록화의 권한을 부여하는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은 역사적인 현장 및 구조물 등에 대한 기록화 및 보존 작업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의 수집을 통한 보존, 수집과 기록화를 통한 생산된 기록으로 정보를 대중에게 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해야 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자문위원회, 정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도 있어 체계적으로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의 규칙과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형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의무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적보존법(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Section 110b를 살펴보면 역사적 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철거되는 장소를 기록으로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유적지법(The Historic Sites Act)」에서도 자문위원회의 목적,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국가유적보존법(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Section 106의 자문위원회, 연방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에 관한 조항이 있다. 자문위원회에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을 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존재로 인해 좀 더

체계적인 기록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을 대상으로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재 기록화가 법을 바탕으로 기록화를 수행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의 규정이 필요하다.

3) 지속적인 기록화를 위한 방안

문화재청에서는 기록화 사업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기록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7월 3일에 등록문화재 제374호로 지정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약 9개월에 거쳐 기록화가 진행되었다.

2009년 시행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기록화는 기록화가 수행된 이후 수리와 보수를 거쳐 현재는 외관 및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군산근대건축관으로 사용용도 또한 변화하였다. 아래의 〈표 1〉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주요 연혁으로, 건축물의 사용용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1〉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주요 연혁(문화재청 2009, 49)

연도	주요 내용
1911년	조선은행 군산출장소로 영업 개시
1916년	진남포, 목포, 부산출장소와 함께 지점으로 승격
1918년	현재의 대지 매입
1920년	현재의 건물 공사 시작, 12월에 상량식 거행
1922년	조선은행 군산지점 준공
1930년	숙직실 등이 있던 부속영역 지붕 보수
1953년	한일은행에서 인수하여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
1981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1982년	일반유흥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증축
1984년	무도유흥음식점(플레이보이 나이트클럽)으로 용도 변경

1990년	화재 발생 후 본 건물 방치
1990년대 중반	정면부에 노래방 증축
1990년대 중반 이후	미사용
2008년	군산시에서 매입, 등록문화재 지정 (7월3일)
2009년	노래방 철거
2011년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 보수
2013년	조선은행 군산지점 주변 정비, 근대건축관 개관

건축물의 사용용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81년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부터 예식장, 일반유흥음식점 등 사용 용도가 빈번하게 변화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 화재 이후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축물은 방치되었다. 1999년 군산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환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본식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1년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축물의 수리와 보수를 통하여 2013년 근대건축관으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변화하였다. 현재는 근대 건축 및 은행관련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사용용도 변화 사진[13)]

13) ①번 사진은 2009년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 당시에 사진이다(문화재청, 2009, 8).
②번 사진은 현재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수리를 거쳐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재탄생한 사진이다(군산시청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5.12.9. http://www.gunsan.go.kr).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점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사업은 2009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외관 및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근대건축관으로 사용용도가 변화된 모습을 기록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산에 거주하지 않거나, 관광의 목적으로 군산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2009년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모습은 건물의 미사용으로 인해 방치된 상태인 줄 알 것이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에게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도 사용용도가 변화하기 전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용용도 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록화 조사처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정보〉문화재에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검색 해보았다. 검색 결과에서 각종조사서를 클릭 했을 때 보수현황, 현재용도, 보존상태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수리 후의 사진 몇 장이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도 있고,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재 사용용도에 대한 정보마저 없는 것도 있었다. 건축물마다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보존 측면에서 근대건축물의 현상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건축물의 외관,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기록화에 대상으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록 자료를 통해 현재의 건축물의 상태와 원래의 상태 및 후에 더해진 변경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으며, 이는 기록보존 및 학술자료 구축과 건축물의 수리 복원 및 고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진 2013, 93). 이를 위해 근대건축물의 외관 및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용용도 변화에 따른 필요한 부분의 지속적인 기록화 조사가 이루어져서 일반 대중들과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가 존재하고 있고,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의 직원은 건축물 등의 기록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

게 기록화 기술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여름 기록 프로그램(Summer recor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 기록 프로그램은 매년 학생, 실무자의 고용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 한다.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주로 건축사무소와 각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진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속적인 기록화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축사무소 및 각 대학의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학과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지속적인 기록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2010년 조사한 근대역사문화지구의 근대건축물은 모두 94개다. 하지만 실제 문화재로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10곳에 불과하다(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기사). 이처럼 군산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건축물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이 근대건축물 또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근대문화유산거리를 조성하면서 근대건축물을 수리하여 커피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이 여러 건이 있지만 모두 기록화 조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등록문화재로 10건이 지정 되어 있지만 4건에 대해서만 기록화 조사가 진행되었다. 6건은 기록화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도지정 유형문화재,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도 기록화 조사가 수행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문화재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기록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비용이나 인력 등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른 건축물 기록화로 나머지 건축물들도 기록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레벨Ⅰ, Ⅱ, Ⅲ의 기록화의 지침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서 기록

화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이 달라졌다.

〈표 2〉 건축물 중요도에 따른 기록화(문화재청 2004, 26)

구분	실측도면	사진	보고서
중요도 Ⅰ	■완전한 도면 –배치, 평·단·입면, 상세 등 최소 10매 이상	■기록용 대형카메라 촬영 –내·외부, 상세 등 최소 10매 이상 ■35mm 슬라이드 촬영	■완전보고서 –관련 자료를 최대 한 찾아 분석·수록
중요도 Ⅱ	■간략한 도면 –배치, 평·단·입면, 상세 등 최소 5매 이상	■기록용 대형카메라 촬영 –내·외부, 상세 등 최소 5매 이상 ■35mm 슬라이드 촬영	■요약보고서 –관련 자료를 찾아 요약 수록
중요도 Ⅲ	■스케치 도면 –평·입면, 상세 등 2매 이상으로 현장 스케치 한 도면	■35mm 슬라이드 촬영 ■디지털카메라 촬영	■간략보고서 –건물의 개요 및 연력을 간략히 수록
중요도 Ⅳ	■도면생략 –기초조사카드로 대체	■35mm 슬라이드 촬영 ■디지털카메라 촬영	■기록관리카드 작성

〈표 2〉는 미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서 역사적 건축물 조사의 표준을 문화재청이 참고하여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지침서』에 수록한 표이다. 건축물의 중요도의 따라 기록화의 방법을 작성해놓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근대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화가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도는 다소 떨어지나 기본 기록화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에 한해서 간단한 도면, 간단한 사진, 간단한 보고서의 내용을 위주로 기록화 사업을 동시에 계획한다. 이러한 단계별 시행의 이점은 보다 많은 양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고도의 기록화 작업을 요하는 선별된 대상물에 투여하는 시간과 자원의 효율적

>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다. 또한, 간단한 기록화는 건축과 학생들에 의해서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문화재청 2004, 26).

위의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발행한『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지침서』의 내용의 일부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문화재청도 중요도에 따른 기록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근대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생산 되는 기록이 달라지는 기록화가 진행되어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 기록은 미래에 과거의 도시를 재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컬렉션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 촉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기록화 성과물 활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에게 문화재 정보의 제공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기록화 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의 서비스는 문화재청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화재청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원형기록정보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사진, 도면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생산 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정보의 부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원형기록도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 즉, 메타데이터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은 첫 번째, 기록화 조사 보고서의 경우 일정 수량만 발행하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에 기록화 조사 보고서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도서관에서 기록화 조사 보고서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게 검색을 통하여 기록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이트에서 문화재 검색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간략한 설명, 사진, 실측도면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의회도서관에 구축한 역사적 건축물 조사(HABS), 역사적 공학기술 기록(HAER), 역사적 경관 조사(HALS) 컬렉션과 같이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는 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체계적인 컬렉션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다.

기록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기록들이 한 곳에 모여 컬렉션으로 구축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기록화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이 기록화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발행한『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지침서』에서 문화재청의 웹사이트에 기록화 사업 컬렉션을 만들어 유지, 관리하는 것의 제안(문화재청 2004, 75)을 볼 수 있었다. 컬렉션 구축의 실행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문화재 정보제공 사이트인 국가문화유산포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검색도구의 종류로는 종목(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지정일(문화재로 지정된 일), 유형(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지역, 시대(원시시대부터 시대미상까지), 출처(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등 각종시스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 국가문화유산포털 검색도구

사례로 분석했던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입력해서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만 지정(종목: 등록문화재, 지역: 전북, 시대: 일제강점기)하여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입력하고 검색하니 원하는 정보가 나왔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검색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검색결과를 살펴보니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에 관한 종목, 시대, 위치, 분류정보와 이 근대건축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었다. 사진 89장, 도면 40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있는 사진과 도면들은 대부분 기록화 조사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결과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진 한 장을 클릭해 보았을 때 〈그림 11〉과 같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1〉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사진에 관한 정보

사진제목, 문화재유형 및 문화재지정일, 파일유형, 파일포맷, 출처, 파일크기, 해상도, 저작권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산 맥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었다. 도면의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에 대한 기록화 조사 보고서는 함께 있지 않아 보고서는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기록화 조사부터 정보제공 서비스까지 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의 경우 건축물 기록화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기록의 관리 및 컬렉션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전문기관인 미 의회도서관으로 이관 하여 이뤄지고 있다. 미 의회도서관에서 구축한 컬렉션을 통해 건축물에 관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사진 목록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제목, 다른 제목, 생산자, 관련이름, 만든 날짜, 매체유형과 기록의 수, 권한, 건축물에 관한 짧은 설명문, 저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진 목록이 있어서 실제로 사진을 확인하지 않아도 어느 방향에서 찍은 사진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진과 실측도면 또한 개별로 기술정보가 담겨 있었다. 사진, 실측도면의 경우에는 디지털 이미지가 표시되는 않는 경우에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림 12〉 HABS, HAER, HALS의 컬렉션 중 Kenworthy Hall, Marion, AL의 첫 화면

앞에서 살펴본 3) 지속적인 기록화를 위한 방안에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수리와 복원을 거쳐 외관 및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는 근대건축관으로 사용용도가 변화하였다. 하지만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는 변화된 정보를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지속적인 기록화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색도구의 개발과 사진, 실측도면의 생산 맥락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등을 통한 컬렉션 구축을 통해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통한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로 근대건축물 기록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의 문화재활용국 소속 근대문화재과에서 2001년 서울에 위치한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을 시작으로 2014년도까지 183건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속적인 기록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수리와 보수를 거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전의 기록화를 시행하였더라도 이후에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변화하는 일이 발생 할 것이다. 예로 들어 군산의 경우에는 4개의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기록화를 시행하였지만 후에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조성하면서 수리와 보수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변화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록화를 위해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축사무소, 대학에서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역사학과, 건축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요도에 따라 생산 되는 기록이 달라질 수 있는 기록화가 진행 되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기록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기록들에 대한 컬렉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사진, 실측도면의 맥락정보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었고 보고서는 함께 있지 않아 따로 찾아 봐야 하는 점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검색도구의 개발, 사진 · 실측도면의 맥락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을 통해 문화재 기록화 사업 컬렉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기록화를 통해 문화재의 변경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 때문에 근대건축물은 일제의 잔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수의 근대건축물이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 되면서 개발의 목적으로 근대건축물은 철거 되었다. 하지만 근대건축물은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근대건축물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을 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근대건축물의 보존은 원형을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대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근대건축물의 보수를 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의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기록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식, 김태영. 2002.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현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18(12), 127-134.

김수진. 2013. 한국 근대건축문화재의 박물관 활용과 대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김종수. 2009.『군산 개항의 역사적 의의』. 서울: 선인.

문예은. 2010.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 : 군산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재청. 2004.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지침서. 대전: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5. 근대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대전: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7. 문화재 기록화사업 종합개선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7. 2007년 문화재 기록화 사업 종합개선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양은정. 2012.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60~2010년대의 도심부 계획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공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세욱. 2015. 미국의 협력 아카이브즈(Affiliated archive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임진희. 2013.『전자기록관리론』. 서울: 선인.

연합뉴스. 2008. 국회 토론회서 서울시청사 철거 논란. 검색일자: 2015. 11. 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11659

세계일보. 2015. 헐리고 불타고…홀대받는 근대문화유산. 검색일자: 2015.12.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7/20150727003471.html?OutUrl=naver